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8214 |
|----------|------|

발의연월일 : 2021. 2. 19.

발 의 자 : 김홍걸 · 김경만 · 김윤덕  
양정숙 · 유동수 · 이규민  
이용빈 · 이학영 · 임오경  
정필모 · 한준호 · 황운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철회할 수 있음.

그러나 방문판매 등은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가 높고, 충동에 의한 구매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청약철회 기간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판매 상품에 소위 ‘끼워팔기’로 인해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무상제공 제품의 대금은 대부분 판매 상품의 대금에 별도로 포함되고 소비자가 반품 요청을 하더라도 거절되는 사례가 빈발함.

이에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 등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로 발급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및 제37조의2).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때에는 각각의 재화등에 대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단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제4호 중 “14일”을 각각 “30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 및 계속거래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 및 계속거래업자등이 제7조제2항 및 제16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계속거래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생략)</p> <p>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lt;후단 신설&gt;</p> <p>③ ~ ⑤ (생략)</p> <p>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p> | <p>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u>이 경우 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때에는 각각의 재화등에 대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청약철회등) ① -----</p> <p>-----</p> <p>-----</p> <p>-----</p> <p>-----</p> <p>-----</p> <p>-----</p> |

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  
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  
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  
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  
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  
던 날부터 14일

가. ~ 다. (생략)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  
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  
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  
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  
일

② ~ ⑤ (생략)

<신설>

-----  
-----.

1. -----  
-----30일. -----  
-----  
-----  
-----  
-----30일

2. -----  
-----  
-----  
-----  
-----30일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  
-----  
-----  
-----  
-----  
-----30일

4. -----  
-----  
-----  
-----30일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소비자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 ① 방문판매업자, 전화

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 및 계속거래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 및 계속거래업자등이 제7조제2항 및 제16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